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고향사랑기부금법」이 일부 개정('24. 2. 20. 공포, '24. 8. 21. 시행)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·접수 제한기준 개선 및 위반사실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과 절차 규정(안 제2조 및 별표)

- 「고향사랑기부금법」의 경미한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“경고”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
-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위반 사실 조사 절차와 조사결과에 따른 기부금 모금·접수 제한 요청 절차를 신설함

나. 법률 규정 외에 금지되는 모금방법으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’ 개정(안 제3조제3항)

- 종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·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등에서의 적극적인 기부 권유·독려 금지 조항을 삭제함
- 법률상 금지되는 모금방법인 ‘호별 방문’과 유사한 ‘개인이나 법인의 영업장, 직장 등 업무 등을 위한 장소의 방문 모금’을 ‘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방법'으로 추가함

다. 모금의 횟수와 내용,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 규정(안 제3조제4항)

- '전자적 전송매체'의 발송횟수 상한을 분기당 2회로 규정하고,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「정보통신법」 제50조를 준수토록 규정함
- 모금활동에 활용할 개인정보와 관련하여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을 하도록 규정함

라.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현장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원(안 제5조 및 제8조의2)

-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이내를 한도로 고향사랑기금에서 답례품 구매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
- 법 제12조에 의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연구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'고향사랑기부제 연구센터'를 설치하고 운영할 근거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7. 1. ~ 7. 25.)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위반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 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법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서로 별표의 기준에 따른 경고 또는 기부금의 모금·접수 제한을 요청해야 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”을 “법 제4조 및 제7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개인이

나 법인의 영업장, 직장 등 업무 등을 위한 장소를 방문하여 수행하는
모금방법을 말한다.

④ 법 제7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, 형
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”에 따른 준수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
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

2. 분기당 2회 이하의 전자적 전송매체[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
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정보통신망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
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의
이용

3.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하는 경우 「정보통신망법」 제50조의 준수
제4조제2항제3호 중 “500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)”을 “(답례품과 그 구입비용
의 한도 및 금지품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9조제1항”을
“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고향사랑기부제 연구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) 행정안전부장관
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
사·분석 및 연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
성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고향사랑기부
제 연구센터를 설치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별표 제1호라목1)부터 4)까지 외의 부분 중 “줄일”을 “줄이거나 모금·접수의 제한을 유예하는 “경고” 조치로 갈음할”로 하고, 같은 목 각 세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제한처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“경고” 조치를 할 수 없다.

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·독려한 경우	법 제4조제2항제1호	1개월	2개월	4개월
---	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

별표 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호 제3호(중전의 제4호) 위반행위란 제3호 중 “법 제7조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7조제1항제2호”로, “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)를”을 “서신을”로 하며, 같은 호 제4호(중전의 제5호) 위반행위란 제4호 중 “법 제7조제1항제2호”를 “법 제7조제1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법 제7조제2항 및 이 영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	법 제4조제2항제2호	1개월	2개월	4개월
---	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

별표 제2호제5호(중전의 제7호) 위반행위란 제5호 중 “법 제7조제1항제4호”를 “법 제7조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부자가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기부자	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)
	주소	전화번호
기부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		
기부금액	금 원(₩)	
기부방식	[] 일반기부(지방자치단체에 기부) [] 지정기부(특정사업에 기부)	
기부대상 기금사업의 명칭 (지정기부 선택 시 작성)		
답례품	[]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신청	
	[]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함	
	[] 답례품을 제공받지 않음	

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합니다.

년 월 일

기부자

(서명 또는 인)

지방자치단체 귀하
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주민등록표 초본 2.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3.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기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위의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기부자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는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기부자가 직접 작성하여 기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.
*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.
- 답례품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향사랑 기부금 모금·접수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를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·접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된 별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· 접수 제한기준) (생 략)	제2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· 접수 제한기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 확인 등의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법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서로 별표의 기준에 따른 경 고 또는 기부금의 모금 · 접수 제한을 요청해야 하고, 해당 지 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
제3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 법 및 절차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	제3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 법 및 절차) ① ----- 법 제4조 및 제7조----- -----

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”란 「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홍보매체를 말한다.

③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·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·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·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.

<신설>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개인이나 법인의 영업장, 직장 등 업무 등을 위한 장소를 방문하여 수행하는 모금방법을 말한다.

④ 법 제7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금의 횟수와 내용,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”에 따른 준수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

2. 분기당 2회 이하의 전자적 전

④ (생략) 제4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) ① (생략)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. 1. 2. (생략) 3.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<u>500만원</u>을 초과하는지 여부 4. (생략) ③ ~ ⑥ (생략) 제5조(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	<u>송매체[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정보통신망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의 이용</u> 3.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하는 경우 「정보통신망법」 제50조의 준수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제4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2천만원</u>----- -- 4. (현행과 같음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 제5조(답례품과 그 구입비용의 한
---	--

목) ① <u>법 제9조제1항</u>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”란 매 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도 및 금지품목) ① <u>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4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<u>제8조의2(고향사랑기부제 연구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)</u> 행정안전부장관은 <u>법 제12조제1항</u>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·분석 및 연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<u>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</u>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고향사랑 기부제 연구센터를 설치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507